

『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』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46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8. 25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지역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
-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, 휴게공간이 부족한 서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,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전이 필요함

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계획

○ 사업개요

- 위 치 : 舊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(내당동 305-22) 외 2필지
- 규 모 : 대지면적 753m²(228평), 연면적 1,650m²/지하1층, 지상3층
- 사업기간 : 2023년 8월 ~ 2026년 3월
- 사 업 비 : 92억원(부지매입14, 공사비68, 설계·감리비8, 자산취득비2)
- 주요시설(안)
 - 1층 :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 - 지하, 2~3층 : 청소년문화의 집

구분	층	면적(m ²)	주요시설
		1,650	
청소년문화의 집	지하	400	밴드연습실 코안노래방(3), 댄스연습실 동아리실(2)
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	1층	450	사무실, 상담실(4), 강의실(2), 상담대기실
청소년문화의 집	2층	400	북카페, 요리제빵실, 게임존, 프로그램실(2)
청소년문화의 집	3층	400	체력단련실(소규모 임벽장), 강당

○ 매입대상 부지현황

소재지	대지면적	지목	소유자	비고
서구 내당동 305-21 서구 내당동 305-33	377.6m ²	대	임 안 식 김 태 호	

- 취득방법: 협의 매입
 - ※ 취득가액 결정은 소유자 협의결과에 따름
- 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: 【붙임1】 참고

○ 추진일정

- 대구시 지방재정투자심사 : 2023. 10월
-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: 2023. 10월
- 부지매입 계약 및 등기 : 2023. 11월
-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 : 2023. 11월 ~ 2024. 1월
- 설계공모 : 2024. 2월 ~ 4월
- 건축 실시설계 : 2024. 5월 ~ 9월
-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, 공사입찰 계약 : 2024. 10월 ~ 12월
- 공사 착공 : 2025. 1월
- 공사 준공 : 2026. 3월

나. 공유재산 관리계획

○ 관리계획 재산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건수	면적(m ²)	추정가액	추진기간	비고
취 득	토지	2	377.6	1,400	2023. 8월 ~ 12월	매입비
	건물	1	1,650	7,600	2024. 1월 ~ 2026. 3월	신축공사비 등

○ 공유재산 관리계획서(총괄표)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분			2023. 8월~12월			2024.1월~2026.3월			합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 득	계	토지	2	377.6	1,400				2	377.6	1,400	
		건물				1	1,650	7,600	1	1,650	7,600	
		기타										
	매입	토지	2	377.6	1,400				2	377.6	1,400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신축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1	1,650	7,600	1	1,650	7,600	
		기타										

○ 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 : m², 백만원)

일련 번호	재산표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재산 소유자	취득목적
	구분	소재지(예정부지)	면적				
	총계			9,000			
1	토지	서구 내당동 305-21 서구 내당동 305-33	377.6	1,400	2023.8월 ~12월	임안식 김태호	청소년 문화의집 건립
2	건물	서구 내당동 305-21 서구 내당동 305-22 서구 내당동 305-33	1,650	7,600	2024.1월~ 2026.3월	신축 (대구광역시 서구)	

[관계법령]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]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-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]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 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-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.

1. 사업목적 및 용도
2. 사업기간
3. 소요예산
4. 사업규모
5. 기준가격 명세
6. 계약방법

⑦ 이 조에서 “기준가격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. 다만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

[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]

제12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

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,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